

건강등급 적용 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건강등급의 개념]

제 4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적용 대상]

제 5조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제 6조 [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제 7조 [건강등급의 재산정]

제 8조 [보험료 선납 시 건강등급의 적용]

제 9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건강등급 적용]

제10조 [특약의 소멸]

제11조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제12조 [기타 사항]

[별표] 할인 대상상품 및 할인율

건강등급 적용 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건강등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4.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 [건강등급의 개념]

① 건강등급이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등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건강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라 합니다)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등급 산출 시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다만,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의료이용기록 등이 사용되며,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ALT, 감마GTP),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시스템 상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등급은 유효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은 '0등급'으로 산출됩니다.

⑤ 건강등급은 제6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6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및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적용 대상]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인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당사의 청약 절차 중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한 경우
- ② 이 특약은 주계약 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청약 시 선택한 건강등급 적용여부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청약 시 건강등급 적용을 선택한 계약이 제3항에 따라 건강등급 적용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이 완료된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및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건강등급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⑤ 청약 시 건강등급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이 제3항에 따라 건강등급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신청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건강등급이 적용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이미 선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선납보험료의 최종납입일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건강등급이 적용됩니다.

제 5조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따라 “건강등급별 할인을”을 적용하여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 및 “건강등급별 할인을”은 “할인 대상상품 및 할인을(별표 참조)”을 따릅니다. 다만,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 중 선택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상이한 선택특약은 “건강등급 대상상품”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은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선택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담보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대상상품에서 제외합니다.
- ④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건강등급을 재산정하며,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영업보험료를 할인합니다.
- ⑤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제 6조 [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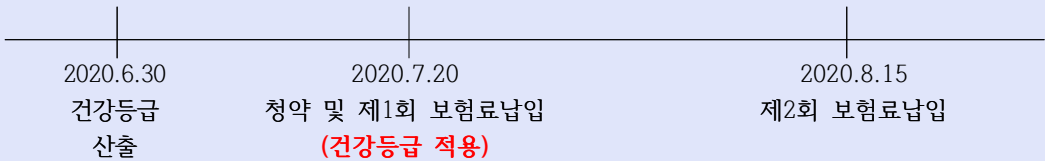
- ① 주계약 청약 시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청약 시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6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등급은 청약일부터 적용하며,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하여 건강등급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청약 완료 이후 피보험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강등급 산출 방법 및 청약 이후 건강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산정기한”이라 합니다)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산정기한”이라 함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날로부터 15일과 제2회 보험료 납입 기일 직전 2영업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건강등급의 산출이 필요한 피보험자는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제2회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은 0등급으로 적용됩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건강등급이 적용되어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적용된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⑦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가입 시 건강등급 적용 절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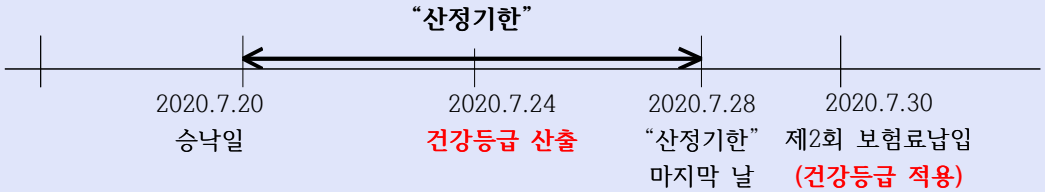
① “청약 이전”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제6조 제1항)

<예시> 7월 20일 청약 및 제1회 보험료 납입, 8월 15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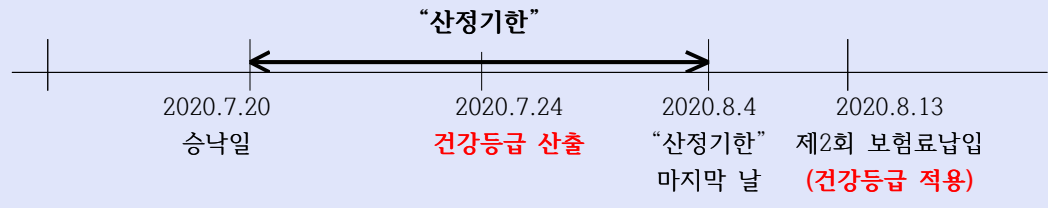
②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 승낙 이후 15일 이전 (제6조 제5항)

<예시> 7월 20일 승낙, 7월 30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③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 승낙 이후 15일 이전 (제6조 제5항)

<예시> 7월 20일 승낙, 8월 13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제 7조 [건강등급의 재산정]

① 건강등급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연계약해당월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재산정 기간”이라 합니다)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년 “재산정 기간”이 도래하면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1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2. 건강등급 산출 방법
3. 건강등급 변경 시 적용되는 할인을
4. 제6항에 따라 건강등급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

③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연계약해당월의 첫 번째 날(1일)(이하 “건강등급 재산정일”이라 합니다)에 건강등급을 변경 적용하며, 변경된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직전 90일 이내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을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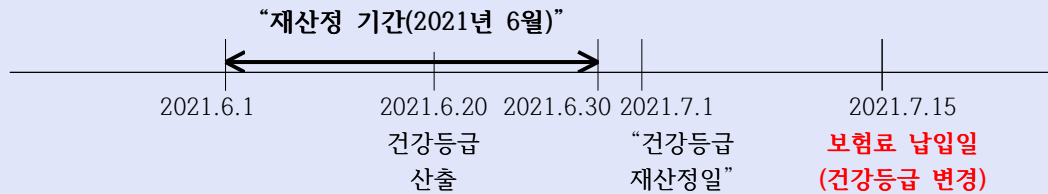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에는 건강등급 재산정 대상 계약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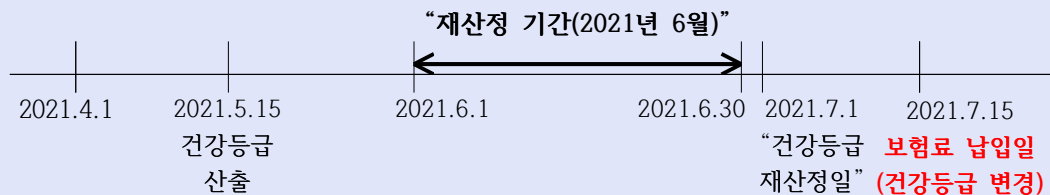
[건강등급 재산정 절차 예시]

<예시> 연계약해당일 매년 7월,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15일

①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제7조 제3항)



②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90일 이내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제7조 제4항)



제 8조 [보험료 선납 시 건강등급의 적용]

- ① 이 특약이 적용된 계약은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선납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건강등급은 선납 시점의 건강등급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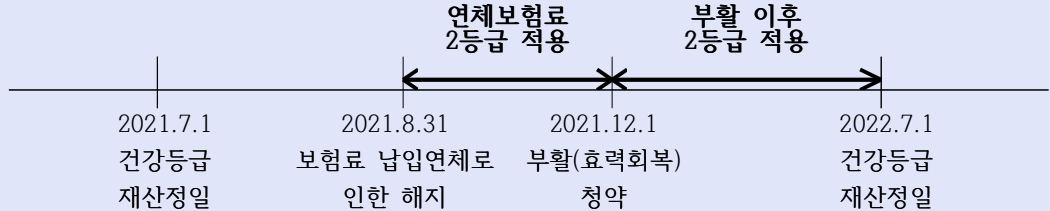
제 9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건강등급 적용]

- ① 주계약 약관(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른 부활(효력회복) 계약에서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각 보험료 납입해당일의 유효한 건강등급으로 합니다.
- ②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점에 유효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피보험자는 제5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산출한 건강등급은 부활(효력회복)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효한 건강등급이란 제6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및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최초 청약 시 또는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에 산출하여 적용된 건강등급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건강등급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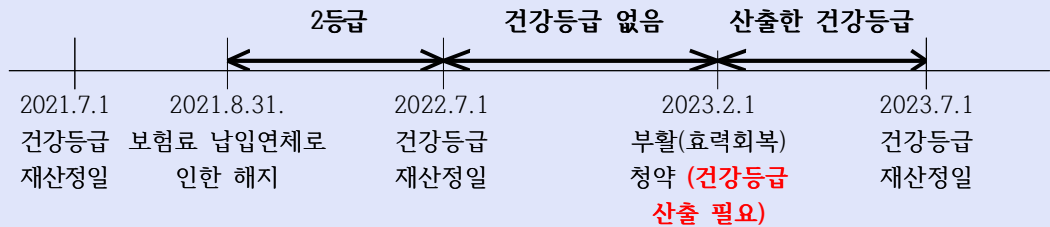
<예시1>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당시 건강등급: 2등급
- 연체보험료에 적용되는 건강등급: 2등급
- 부활 이후 적용되는 건강등급: 2등급



<예시2>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당시 건강등급: 2등급
- 연체보험료에 적용되는 건강등급
 - ㉠ 2021.8.31 ~ 2022.7.1 : 2등급
 - ㉡ 2022.7.1 ~ 부활(효력회복) 청약 이전 : 건강등급 없음
- 부활(효력회복) 이후 적용되는 건강등급: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건강등급 산출 필요



제10조 [특약의 소멸]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제1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①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와의 계약해지,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의 파산선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등급의 산출 및 건강등급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별로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
2. 건강등급 산출 불가 시점에 적용 중인 건강등급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건강등급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일괄 적용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합니다.

1. 건강등급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
2. 건강등급 제도의 운영 여부 및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
3.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
4. 기타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③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건강등급 산출방법, 산출 기한 및 재산정과 관련된 사항, 건강등급별 할인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및 의료이용기록 등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필요한 최신 건강정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3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후 제3항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를 건강등급 산출에 사용하며, 건강등급 산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기타 사항]

①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건강등급 재산정일” 및 “재산정 기간”은 부활(효력회복) 또는 갱신되는 경우(주계약이 갱신행 보험인 경우에 한함)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및 선택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

할인 대상상품 및 할인율

※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은 아래와 같으며,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선택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담보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대상상품에서 제외합니다.

※ 건강등급 할인은 계약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대상상품	건강등급	할인율	
		주계약	선택특약
무배당 ABL 건강하면 THE 소중한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배당 ABL건강드림선지급GI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등급	8.0%	10.0%
	2등급	7.0%	7.0%
	3등급	5.0%	5.0%
	4등급	3.0%	3.0%
	5~9등급, 0등급 ^{주1)} 등급정보 없음 ^{주2)}	-	-
무배당 ABL건강하면THE나은뇌심케어보험	1등급	15.0%	15.0%
	2등급	9.0%	9.0%
	3등급	6.0%	6.0%
	4등급	3.0%	3.0%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네개딱!패키지건강보험 (갱신형)	1등급	-	15.0%
	2등급	-	9.0%
	3등급	-	6.0%
	4등급	-	3.0%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정기보험	1등급	8.0%	-
	2등급	7.0%	-
	3등급	5.0%	-
	4등급	3.0%	-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암보험Ⅲ(갱신형)	1등급	15.0%	15.0%
	2등급	9.0%	9.0%
	3등급	6.0%	6.0%
	4등급	3.0%	3.0%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	1등급	15.0%	-
	2등급	9.0%	-
	3등급	6.0%	-
	4등급	3.0%	-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주1) 0등급: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2) 등급정보 없음: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건강등급 미적용을 선택한 경우